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9~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2009~11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	8

의안번호	제10호
의결연월일	2009. 03.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창도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03.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10
----------	---------

발의연월일	2009. 3. 31.
발 의 자	이창도 의원 외 1

1. 제안이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뜻을 정의함(안 제3조)
- 나. 장기기증의 범군민 확산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 다. 장기기증 접수창구와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 라.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1회 추경예산 반영(천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창군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의약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거창군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읍·면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②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③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의안번호	제11호
의결연월일	2009. 03.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

발의자	이창도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03. 31.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9 ~11
----------	----------

발의연월일	2009. 3. 31.
발 의 자	이창도 의원 외 1

1. 제안이유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안 3조)

○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활동 종사자

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가을철 발열성 질환자의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법규에 정함

라. 보상금의 청구· 지급 및 지원제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 5조부터 제6조)

○ 보상금 청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농지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나. 예산조치 : 1회 추경 확보 (천원)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2.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을 말한다.
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
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의 전염병진단기준에 의해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암시야)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5조의 의해 지원을 받을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의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 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전염병 진단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는 별표 1의 3과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 4와 같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